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 887 제안연월일: 2012. 2. 7.

제 안 자: 김지근, 이효상, 신성봉, 김순점,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일부개정(2011. 3. 8)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 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
○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는 규정임

나. 운영계획 수립공고 및 적용범위(안 제6조)

○ 예산편성이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킴

다. 의견수렴 절차(안 제7조)

○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회의개최 방식과 설문조 사, 공모 등을 규정하였음

라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(안 제9조 내지 제13조)

○ 주민참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 위원 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규정으로 위원회 명칭, 위원 구성, 회 의운영, 위원회 임무 및 임기, 위원회 기능, 위원회 운영방법 등이 되겠음

마. 주민의견 수렴 등 공개(안 제14조)

○ 주민의견수렴 결과 및 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규정이 되겠음

바. 결과 공개(안 제9조)

○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

4. 근거법령

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

나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

4. 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주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를 말한 다.
 - 1. 울산광역시중구(이하"구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.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자
- 제3조(법령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·방법 등은 「지 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 령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.
- 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주민의 권리)**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**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**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 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,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, 주민참여예산의 범위, 주 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포함하지 않는다.
- 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, 공청회 ,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,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- 제8조(의견 제출)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9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구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

 - 1.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
 - 2. 예산 및 행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

 - 2. 예산 및 행정 눈아에 신문적인 시극이 쓰는 시모이 되어도 모르는데 기교로 받은 자
 3. 예산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
 4. 그 밖에 재정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선정된 주민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되도록 구성한다. 다만, 위원회 참여 희망자가 3분의 1 미만 일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- 제10조(임무 및 임기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, 부 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

대행하다

-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제11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 - 1.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.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. 집약하는 활동 3. 그 밖에 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
- 제12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부터 가능한 5일 전 에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 -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④ 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예산담당주
 - 무관이 된다.
- 제13조(위원회 운영원칙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. 1.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.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. 회의의 자율적 운영 유도

 - 4.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.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

 - 6.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 사 범위에서 활동
- 제14조(결과 공개)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위원회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15조(홍보 및 교육) ① 구청장과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위원회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, 주민참여 방법, 구
 - 재정 및 예산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.
- 제16조(재정 및 실무지원)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**제1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의 안 심 사 보 고 서

(의안번호 887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안 연월일: 2012. 02. 07(화) 아 나. 제 자 : 김지근의원 외 3명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2. 02. 13(월)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2. 02. 16(목)

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김영호 전문위원)

○「지방재정법」일부개정(2011. 3. 8)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 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제고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○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정 보공개와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는 규정임
 나. 운영계획 수립공고 및 적용범위(안 제6조)
 이 예산편성이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게시판 등을 통하여
- 공고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킴 다. 의견수렴 절차(안 제7조)

- 예산편성과정에서 추민의견수렴을 위한 회의개최 방식과 설문조사, 공 모 등을 규정하였음
- 라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(안 제9조 내지 제13조)
 - 주민참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설 치 및 구성 등에 대한 규정으로 위원회 명칭, 위원구성, 회의운영, 위원회 임무 및 임기, 위원회 기능, 위원회 운영 방법 등이 되겠음
- 마. 주민의견 수렴 등 공개(안 제14조)
 - 주민의견수렴 결과 및 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규정이 되겠

5. 관련법규 가.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나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

6. 검토의견

- 조례제정 필요성
 - 고 보 조례안은 2011년 6월 2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 위원 회에서 심사한 결과, 부결된 이후 2012년 2월 7일 김지근의원 등 4명 이 의원발의하여 다시 회부한 조례안으로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의 의견 및 사업제안 등을 수렴 반영함으로서 예 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,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
○ 주요내용

- 안 제4조는 주민이 예산편성단계에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규정이 되겠으며, 안 제6조는 예산편성이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규정과 안 제7조는 주민 의견수렴 을 위한 절차과정이 되겠음
- 안 제9조 내지 제13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 고 참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및 예산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음

ㅇ 결 론

- 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
- 2011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률에 규정된 근거에 의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동구, 북구 등에서 이미 시행하여 성과를 낳고 있음 이다만,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할 때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자체수입이 적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인 취약한 재정여건을 고려해볼 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성 등이 논의되어야 하고, 또한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 범위내에서 참여하는 제도이지만 투저단체 투적이에 참여하여 지반이하의 예사시의권은 침해한 소 만 특정단체, 특정인이 참여하여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 함
- 7. 싞사결과 : 원안가결